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관련 1632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7년 2월 27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자료수집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여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

2. 주요골자

- “문화재분야 전문가”를 “문화재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”으로 수정함(안 제6조제3항)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3항 중 “문화재분야 전문가”을
“문화재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”으로
수정한다.

< 수정안 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는 서울특별시 <u>건립추진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</u>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건립 중인 박물관 및 개별 박물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3조(자료구입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<u>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(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체 위원회 포함)</u>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 align="right">〈신설〉</p>	<p>제3조(자료구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운영자문위원회(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 자체 위원회 포함)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시장은 민간전문가에게 국내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자료구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5조(자료의 기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수탁 등의 결정은 필요시 <u>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</u>를 개최하여 자료 수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자료의 기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〈삭제〉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5조(자료의 기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6조(자료수집실무위원회) ①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<u>개별 박물관별로 자료수집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</u>를 둔다.</p>	<p>제6조(자료수집실무위원회) ① ----- ----- <u>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자료수집실무위원회(이하 “실</u></p>	<p>제6조(자료수집실무위원회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

<p>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<u>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</u> 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 이 된다.</p> <p>③ <u>위원은 관장과 박물관의 자료관리관</u>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<u>문화재분야 전문가</u>를 포함할 수 있다.</p> <p>④~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<u>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</u> 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 이 또는 <u>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장</u>(이하 “부서장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</p> <p>③ <u>위원은 개별 박물관의 경우 관장과 자료관리관,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 부서장과 자료관리관</u>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<u>문화재분야 전문가</u>를 포함할 수 있다.</p> 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전원합의로 심의·의결한다.</u></p>	<p>② (<u>개정안과 같음</u>)</p> <p>③ <u>위원은 개별 박물관의 경우 관장과 자료관리관,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 부서장과 자료관리관</u>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<u>문화재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</u>을 포함할 수 있다.</p> 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<u>개정안과 같음</u>)</p>
<p>제7조(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)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<u>개별 박물관별로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</u>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~⑤ (생략)</p>	<p>제7조(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) ① ----- ----- <u>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</u>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) ① (<u>개정안과 같음</u>)</p> <p>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구입대상 자료 최종 심의) 평가위원회에서 심의·평가한 구입대상 자료는 <u>개별 박물관별 운영자문위원회</u>에서 최종 심의한다.</p>	<p>제8조(구입대상 자료 최종 심의) ----- ----- ---- <u>〈삭제〉</u> ----- -----.</p>	<p>제8조(구입대상 자료 최종 심의) (<u>개정안과 같음</u>)</p>
<p>제13조(자료의 대여 등) <u>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</u></p>	<p>제13조(자료의 대여 등) <u>〈삭제〉</u></p>	<p>제13조(자료의 대여 등)</p>

<p><u>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, 열람,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. 단,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		
<p>〈신설〉</p>	<p>① <u>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, 열람,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. 단,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	<p>① 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<p>〈신설〉</p>	<p>② <u>제1항에 따른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.</u> 1. <u>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의 보도·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</u> 2. <u>교육기관의 교육 목적</u> 3. <u>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</u> 4. <u>전시·홍보 등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의 대행목적</u> 5. <u>그 밖에 관장 및 부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</u></p>	<p>② 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<p>〈신설〉</p>	<p>③ <u>자료의 대여, 열람, 복제 시 자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 평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③ 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<p>제15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 의한 <u>시장의 권한</u>은 관장에게 위임한다.</p>	<p>제15조(권한의 위임) ---- ---- <u>시장의 권한</u>은 관장 및 부서장에게 위임한다.</p>	<p>제15조(권한의 위임) 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건립추진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”을 “건립 중인 박물관 및 개별 박물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(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체 위원회 포함)”을 “운영자문위원회(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 자체 위원회 포함)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시장은 민간전문가에게 국내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 중 “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”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개별 박물관별로 자료수집실무위원회(이하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”를 “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자료수집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”이 된다.”를 “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 또는 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장(이하 “부서장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위원은 관장과 박물관의 자료관리관”을 “위원은 개별 박물관의 경우 관장과 자료관리관,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 부서장과 자료관리관”으로 하고, “문화재분야 전문가를”을 “문화재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”로 한다.

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전원합의로 심의·의결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개별 박물관별로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”를 “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개별 박물관별”을 삭제한다.

제13조를 동조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, 열람,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. 단,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.
 -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의 보도·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
 - 2.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
 - 3. 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
 - 4. 전시·홍보 등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의 대행목적
 - 5. 그 밖에 관장 및 부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
- ③ 자료의 대여, 열람, 복제 시 자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평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5조 중 “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한다.”를 “시장의 권한은 관장 및 부서장에게 위임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<u>건립추진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</u>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<u>건립 중인 박물관 및 개별 박물관</u>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3조(자료구입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<u>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(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체 위원회 포함)</u>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(자료구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<u>운영자문위원회(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 자체 위원회 포함)</u>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시장은 민간전문가에게 국내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5조(자료의 기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수탁 등의 결정은 필요시 <u>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</u>를 개최하여 자료 수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자료의 기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수탁 등의 결정은 필요시 <u><삭제></u>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 수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
<p>제6조(자료수집실무위원회) ①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<u>개별 박물관별로 자료수집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</u>를 둔다.</p> <p>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<u>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(이</u></p>	<p>제6조(자료수집실무위원회) ①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<u>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자료수집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</u>를 둔다.</p> <p>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<u>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(이</u></p>

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이 된다.

③ 위원은 관장과 박물관의 자료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문화재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

④~⑤ (생략)

<신설>

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이 또는 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장(이하 “부서장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개별 박물관의 경우 관장과 자료관리관,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 부서장과 자료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문화재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.

④~⑤ (생략)

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전원합의로 심의·의결한다.

제7조(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)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개별 박물관별로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~⑤ (생략)

제7조(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)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~⑤ (생략)

제8조(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) 평가위원회에서 심의·평가한 구입대상 자료는 개별 박물관별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.

제8조(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) 평가위원회에서 심의·평가한 구입대상 자료는 <삭제>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.

제13조(자료의 대여 등) 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, 열람,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. 단,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13조(자료의 대여 등) <삭제>

① 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, 열람, 복제를 허가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할 수 있다. 단,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의 보도·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 2.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3. 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 4. 전시·홍보 등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의 대행목적 5. 그 밖에 관장 및 부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③ 자료의 대여, 열람, 복제 시 자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평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</p>
<p>제15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한다.</p>	<p>제15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관장 및 부서장에게 위임한다.</p>